

울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4714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피고, 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우중

변론 종결 2020. 6. 11.

판결 선고 2020. 7. 9.

제 1 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615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56,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1,156,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1. 7. 피고에게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신청서(이하 '이사건 탈퇴신청서'라 한다)에 원고의 권리포기약정 내지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원고의 부담금 반환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7. 이 사건 탈퇴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탈퇴신청서에는 사유로 울산광역시 남구 B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탈퇴 신청하며, '상기 본인은 현재까지 기 납부한 업무용역비 및 부담금 일체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고 차후 조합원 탈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부분에 자필로 "사업지연"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퇴신청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는(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반면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므로(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탈퇴와 자격상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유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도 상이하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탈퇴신청서는 탈퇴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조합에 그 의사를 통고하는 취지의 문서라 할 것이고 신청서에도 'B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탈퇴 신청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로, 그리고 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기재내용대로 조합 탈퇴 및 탈퇴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탈퇴신청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상실한 원고에게 탈퇴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요건 결여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조합탈퇴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청서 기재내용대로 그때 조합 탈퇴로 인해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